



[ 2018. 4. 4.] [ 2018 - 67 , 2018. 4. 4., ]

( 가 ) 044 - 215 - 5378

1

1 ( ) 「 」 ( ‘ ’ ) 26 2 「  
」 「 」 ( ‘ ’ )

2 ( ) 「 」 2 1 2 4

1 , , , , ,

3 ( )

1. ‘ ’ 「 가 」 6 2 , 「 가 」

2

2.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  
「 」 2

3. ‘ ’

4. ‘ ’ 12 , , ,

5. ‘ ( ‘ ’ ) ’ 「 」 26 2

6. ‘ ’ 「 」 30 1 2 33 1

7. ‘ ’ 「 」 34

8. ‘ ’ 가

가 「 」 15 1

9. ‘ ’ 「 」  
「 」 10 8 3 2

---

10. ' ' 「 」 27 2 가

11. ' ' 「 」 27 「 」 12 2 가

12. ' ' 「 」 27 「 」 12 2

13. ' ' 「 」 10 8

14. ' '

1 「 」 2

4 ( )

' , ' , ' ,

1. 가

2. ,

3.

4.

5. , 가,

1.

2.

3.

4.

5.

1.

2.

3. , , ,

4. ,

---

4 2( )

, , 2 4 .  
, ,

4 3( )

가

9 15

1

2

( ‘

6 3

’ )

5 ( ) 「

」 6 3

2

1

1

12

3

1.

2.

3. 5

4.

5.

6.

3

가

가

6 ( )

「 」 6 3 2

---

가 ,

7 ( )

8 ( ) 가

3 ( ' 2 ' )

9 ( )

- 1.
- 2.
- 3.
- 4.

가

10 ( )

11 ( 가) 가 「 」 15 2  
( ), 「 」 6 가 , 가 ,  
가 가

12 ( ) 1

3 31 30

가

4 ( ' 3 ' )

13 ( )

---

가  
가 ,

가

가

1. 「 」 31 2

2. 14 2 1

14 ( )

2

, 「 」 16 2

15

1.

2.

3.

4.

5.

6.

가

14 2( )

1 2 「 」 37 2

가 , 가 가 1

2

4

1 2

14 3( )

」 37 2

---

1

가

,

.

2

,

3

15 (

)

「

」

17

2

1

5

15

,

2

가

가

2

3

가

1

3

16 (

)

「

」

18

가

1.

2.

3.

가

,

4.

5.

2

가

1

2

가

17 (

)

2

,1

가

1

1.

2.

가

3. 가 (

)

,

가

,

,

(「

」

,

,

가

,

),

---

가 ( )

, 「 」 26 2

가 1 3

5 ( ' 4 ' )

18 ( ) ( )

( )

1 2 , , ,

19 ( )

1 ,

1

1 3

20 ( ) 「 」 34

가 ,

가

2 , 17 3

2

1 4

---

20 2( )

7

20 3( ) 100

4

3

21 ( )

1

5

2

가

1.

2.

3. 「 」 2 4 가 ( )

22 (30 ) 21 100 ( 3 4  
. ) 가 30

1.

2. , 가

3. 가 10% 가

1

1. , ,

2. , , ( , ) ,

1

3. 가

23 ( ) 가



---

1.

가

2.

( )

3.

2 2

1

가 가

4

가 「 」 27 1

가

1 , 2 , 4 6

24 ( )

「 」 31 4 「 」 13 2 , 「  
」 13 2 1 4 50

25 ( )

1

2

1.

가

2.

3.

가

2

1

3

26 ( )

가 「 」 27 「 」 12

(

)

가가

가가

1 ' ' , 26 2 2

「 」

379 5%

가

「 」 31 2 「 」

13

1 , 5 7

27 ( ) 26 「 」 28

가 「 」 29

가

가

가

1. 3 10%

2. 6 20%

3. 12 50%

「 」 「 」

「 」 .

1 3

28 ( ) 「 」 27

2 「 」 12 2 가 「 」 5

「 」 2 3



6

( ' )

11

' )

34 ( ) 「 」 11 2 「 」 26

9 ( " " )

「 」 11 1 5

5 3

10

35 ( )

36 ( )

「 」 11 1 2

「 」 11 1 3 4

「 」 4 「 」 26 3 1 8 35 「 」 7

( " " )

37 ( ) 1 ,

38 ( )

( " " )

1.

2.

「 」 11 1 1

, 「 」 11 1 2 3

, 34 3

38 2

3

---

1 ,

39 ( )

40 ( )

7 ( ' 5 ' )

41 ( 가 ) 「 」 33 2 「 」  
14 2 5 가 .

1. 「 」 30 「 」 31 1

2. 「 」 33 가

1 2 「 」 33 3 「 」  
14

1 가

15

가

가 「 」 14 2 5  
가 , 「 」 5

5 「 」 37

42 ( ) 「 」 33 2 가  
, 가 「 」 19 3

43 ( ) , 가 「  
」 31 2 1 2

4 1 「 」 37  
1

44 ( )

1. 「 」 33 2 가 가 , 가  
가 가

2. 「 」 31 2 가

3. 「 」 39 2 「 」 18 가

가 가 가

2

1 5

45 ( )

1. 「 」 39 2

2. 「 」 36 2

---

3. 「 」 33 2 가 가

4. 「 」 31 2

5.

1

45 2( )

1

2

가

1

45

2

4

8

( ' 6 ' )

46 ( )

「 」 35 1 「

」 15 1 2

3 ' ' ,

15

6 12

「 」 35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「

」 15 2

가

「 」 35 2 「

」 15 3

1

6 12

1. 10

2. , , , 10

3. 10

4. , 5

1

가 50

47 ( )  
」 15  
」 16 2

「 」 35 「  
」 16 「

48 ( )  
1

「 」 35 2 .  
4 " "

「 」 35 2 4 5

49 ( ) 「 」 39 2 「 」 18

6  
60 ,

「 」 18 2

「 」 39 2 가 ,  
(  
)

< 2018-67 ,2018. 4. 4.>

1 ( )



---

**【별표 1】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(제9조 관련)**

- 유흥업종 : ‘한국표준산업분류’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- 위생업종 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**【별표 2】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(제3조 관련)**

수준	특징	상·중·하 단계의 분류방법
상·중 단계	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작성여부) 선택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·관리</li> </ul> </li> <li>▪ (작성방향)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</li> <li>▪ (고려사항)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·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</li> </ul>
하 단계	기획재정부 협의 (부처 임의변경 불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작성여부) 필수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드시 등록·관리</li> </ul> </li> <li>▪ (작성방향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부·집행·정산하는 단위</li> <li>-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</li> <li>-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</li> <li>-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 (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)</li> <li>- 특정 지역·기관·목적 사업의 경우,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</li> </ul> </li> <li>▪ (고려사항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설, 삭제, 변경 시 반드시 제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</li> <li>-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/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</li> </ul> </li> </ul>

**【별표 3】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(제3조 관련)**

○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

-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,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

현행	개선(예시)
상품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(한류상품수출지원)</li> <li>•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(아이템발굴컨설팅)</li> </ul>
Biz-Desk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(Biz-Desk운영)</li> <li>•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(콘텐츠박람회개최)</li> </ul>

○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

현행	개선(예시)
인건비	대한체육회 운영 지원(인건비)
경상비	대한체육회 운영 지원(경상비)
지방이전비	대한체육회 운영 지원(지방이전비)
고유사업비	대한체육회 사업비 지원(고유사업비)

○ 기관명 표기

-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

현행	개선(예시)
저작권 조정제도 운영	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(저작권 조정제도)
저작권 심의제도 운영	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(저작권 심의제도)

○ 종결단어 표현

-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

○ ○ 사업 관리	△ △ 상환	□ □ 단지 조성
○ ○ ○ 센터 건립	△ △ △ 센터 운영	□ □ 운영비 지급
○ ○ 차량 구입(구매)	△ △ △ 지도자 육성	□ □ □ 사업발굴 지원
○ ○ 커뮤니티 구축	△ △ 지역 정비	□ □ 단체 후원 등

**【별표 4】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(제3조 관련)**

대분류		세부항목
공 통 속 성	지역별	국내(지역공통, 특정 광역시도)
		국외(아시아, 유럽, 남아메리카, 북아메리카, 오세아니아, 아프리카)
	성 별	남성, 여성
	생 애 주기별	영유아(0~5세), 아동(6~12세), 청소년(13~18세), 청년(19~29세), 중년(30~49세), 장년(50~64세), 노년(65세이상)
	소 득 기준별	긴급지원대상자, 기초생활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, 소득하위 50%이하, 소득하위 70%이하, 기타취약계층
	경 제 활동별	사회초년생, 근로자/직장인, 농업인, 임업인, 축산인, 취업모, 실직자/구직자, 창업자, 자영업자
	교 육 단위별	유치원생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, 대학원생, 일반인 등 기타
	기 업 규모별	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
	개 인 가구구성 유형별	다문화가족, 이주배경청소년, 새터민, 한부모, 신혼부부, 임신/출산, 소년/소녀가장, 조손가정
	서 비 스 유형별* (18개)	행정/통일/외교 지원, 안전 보장, 교육 보장, 문화 활동, 관광/휴양 활동, 종교 활동, 환경 향상, 사회복지 향상, 보훈 향상, 고용안정, 주거안정, 보건/의료지원, 1차산업지원, 산업/에너지 지원, 국토개발지원, 교통/물류 진흥, 방송/통신 진흥, 과학기술 진흥
개 별 속 성 (예)	보 훈 유형별	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기타보훈대상자
	장 애 인 유형별	중증장애인, 경증장애인

\*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(서비스 관점)으로 재분류

**【별지 제호 서식】 보조사업 총괄표**

**I. 보조사업 총괄표**

**1. 공모사업**

민간보조사업

단위 사업	세부 사업	내역 사업	지원 예산	지원 대상

자치단체보조사업

단위 사업	세부 사업	내역 사업	지원 예산	지원 대상

**2. 비공모 사업**

민간보조사업

단위 사업	세부 사업	내역 사업	지원 예산	지원 대상

자치단체보조사업

단위 사업	세부 사업	내역 사업	지원 예산	지원 대상

**II. 세부 사업계획**

사업명 (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)

- 
- 지원예산: (예산금액)
  - 지원내용: (정률/정액, 자부담, 지원기간 등 기재)
  - 지원대상: (민간/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)
  - 사업일정: (공모일 경우, 공모기간, 선정일자, 사업기간)
  - 사업담당: (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)

**【별지 제2호 서식】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(예시)**

수신 : ○○○(보조사업자)

1. ○○○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.

보조 사업명:

보조 사업자:

사업 개요

○ 사업기간:

○ 사업규모:

(단위:천원)

사업명	총사업비	국비	지방비	재정용자	수익자부담
세부사업명					
(△△사업)					
(□□사업)					

\* 괄호안은 내역사업명

○ 국고보조 비율 : 00%

○ 사업내용 :

예산 과 목 : 0000회계 00계정

분야	부문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목·세목
120	123	3000	3031	306	330-01
교통및물류	도시철도	0000	0000	00000	자치단체 경상보조

교부결정내역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명	예산액	기 교부액	교부 요청액	금회 교부액	교부잔액	비고
○○사업	A+B					
(△△사업)	A					
(□□사업)	B					

\*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

2.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, 「보조금법」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,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--

3. 교부조건

가. 보조사업자 등은 「보조금법」과 「보조금법 시행령」,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,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(○○○○법, ○○○○시행령)과 ○○○○규정,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나. ○○○○

다. ○○○○
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○○○○○ 장관



【별지 제3호 서식】 중요재산 현황

중앙관서명					
세부사업명					
재산명					
유형					
목적(용도)					
주소	시·도 구분				
	상세주소				
면적(㎡)					
내역	수량				
	단위				
취득가액(원)		계	국고보조금	지자체부담금	자기부담금
현재가액(원)					
보조금유형					
취득일자					
처분제한기간(일자)					
소유자구분					



**【별지 제호서식】**

**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**

보조사업 개요

보조사업명		
보조사업자	기관명/이름	사업자 등록번호
	주소	

부기등기(附記登記) 말소 대상 부동산

주소		
물건 <sup>1)</sup>	명칭	면적(m <sup>2</sup> )
말소 사유		
사후관리기간	당초 : 연월일 ~ 연월일	변경 : 연월일 ~ 연월일

이 부동산은 「보조금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(附記登記)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**중앙관서의 장**

**직인**



**【별지 제6호 서식】 포상금 지급 신청서**

포상금 지급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① 신청인 (신고인)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전 화 번 호	
② 대리인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전 화 번 호	
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	신고접수 번호	제 - 호	통보서 수령일
	신청금액	포상금 원	
④포상금 지급계좌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
	신청인 (예금주)	성명	생년월일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중앙관서의 장 귀하**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위임장 1부(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등·초본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유의사항**

- ※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※ 위임장 :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,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·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【별지 제7호 서식】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
**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**

신청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소	전화번호
업무대행자	소속기관	사업자등록번호
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위임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
위임사항	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.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.	
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**

신청인 제출서류	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**유의사항**

※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「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**[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]**

보조금시스템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

**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**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.

가.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,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, 부정이용 방지, 비인가 사용방지, 가입 의사 확인,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,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,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

**제2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**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.

- (1) 수집항목
  - 가.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
    - 필수항목 : 아이디, 비밀번호, 성명(법인명), 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공인인증서, 주민번호
    - 선택항목 : 일반전화번호, 이메일수신여부, SMS수신여부
- (2) 수집방법
  - 가. 업무용 포털
  - 나.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

**제3조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**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- (1)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
  - 수집근거 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, 전자정부법 제9조,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
  - 보유기간 : 탈퇴 후 5년까지

- (2)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
  - 보존근거 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, 전자정부법 제9조
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, 이용을 관리합니다.

- (3)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,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
##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
정보제공 동의 내용			
거래은행	계좌번호	정보내용	비고
		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	
동의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
동의서 유효기간	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		
정보를 제공받을 자	한국재정정보원(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) 보조사업 관리기관(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		

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「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동의자

(서명 또는 인)

###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

유의사항
------

- ※ 동의자의 자필서명(인감포함)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.
- ※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.